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2023년도 경남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5
2) 경남형 ○○○ ○○사업 관리 및 정산 업무 부적정	9
3) 직원 채용절차 준수 부적정	17
4) ○○○○ ○○○○사업 운영 부적정	26
5) 정부광고 업무 수행 절차 부적정	3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남관광재단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관광재단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반,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및 집행, 기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3. 4. 27. 부터 5. 3.까지 5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5. 3. 경남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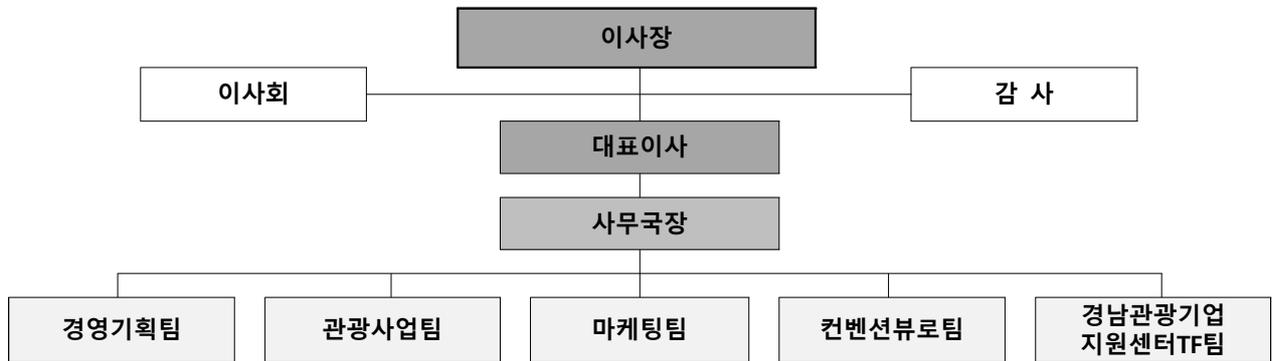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2020년 5월 4일 경남관광재단 출범
- 위 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 설립목적 : 경남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

2. 조직 및 예산 (23. 5월 기준)

- 조 직 : 1국, 경영기획팀 등 5팀



- 인 력 : 정원 21명 / 현원 20명

구 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1(2)	1	1	2(1)	2	4(1)	8	3
현원	20(2)	1	1	1(1)	3	1(1)	8	5

- 예산규모 : 6,310백만 원(출연금 1,522, 사업비 3,893, 기타 896)

3. 주요 사업

- 주민을 핵심 주체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 경남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팸투어 진행'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9건(분처분 7, 현지조치 12)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계	19	2	11	6	15	-	6	9	129	129	-	-	-
처분요구	7	1	4	2	15	-	6	9	0	-	-	-	-
현지조치	12	1	7	4	-	-	-	-	129	129	-	-	-

※ '처분요구'에서 행정상 '통보 2건'과 '주의 2건'은 중복 집계로 순수 처분요구건수는 5건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경남관광재단

-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경남형 ○○○ ○○사업 관리 및 정산 업무 부적정
- 직원 채용절차 준수 부적정
- ○○○○ ○○○○사업 운영 부적정
- 정부광고 업무 수행 절차 부적정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시정 및 주의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팀)
조 치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한다) ○○○○팀에서는 관광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직원의 승진임용, 연봉조정 등 인사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2022년 2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2. 2021년 근무성적 평정점 부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관광재단 직원 근무평정 시행세칙」 제8조(평정업무의 관장)에 따르면 직원의 평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총괄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세칙 제10조(근무성적 평정 방식)에 따르면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참고하여 근무성적 평정표(팀원용)<별지 제3호 서식>와 근무성적 평가표(팀원용)<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근무실적과 직무 수행능력에 대하여 평정을 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과 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할 때에는 근무실적 평가표 상의 분야별 등급별 배점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정점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사담당부서의 근무성적평정 담당자는 1차, 2차 평정자가 제출한 근무성적 평정표와 근무성적 평가표의 배점, 합계점수, 총점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 확인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자는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평정자의 평가의견과 인사담당 부서장이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되 개인별로 각각 3점의 범위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직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경우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표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정확하게 부여하여야 하고, 인사담당부서(○○○○팀)에서는 근무성적 평정표와 근무성적 평가표의 배점부여, 합계점수, 총점 등을 정확하게 검증한 후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근무성적 평정표와 근무성적 평가표의 자료를 확인하여 개인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에서는 2021년 12월 직원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2차 평정자가 직원 4명에 대해 질적목표평가 항목의 기여도 세부항목의 배점을 평정표상의 배점¹⁾과 달리 점수를 부여하여 부당하게 평정을 하였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근무성적 평정표와 근무성적 평가표를 확인하여 배점, 총점, 합계점수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검증을 하여 이상이 없을 때 확인자에게

1) 근무성적 평가표의 근무실적평가는 양적목표평가, 질적목표평가, 자기개발 3개 분야로 구성되고 질적목표평가 중 기여도 부분에서 배점은 S(15)-A(13.5)-B(12)-C(10.5)-D(9) 으로 되어 있으나, 2차 평정자는 5급 3명(○○○, ○○○, ○○○), 6급 1명(○○○)에 대하여 15점(S) 또는 13.5점(A)을 부여했어야 하나 근무성적 평가표 상의 배점기준에도 없는 14점을 부여함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확인자에게 제출하였고, 확인자도 근무성적 평정표와 근무성적 평가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개인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야 했음에도 1차, 2차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점의 순위대로 개인별 서열명부를 확정하였다.

그 결과 2023. 5. 3. 감사일 현재까지 5급 대리 ○○○ 등 4명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평가표 상의 배점 기준 점수와 달리 부당하게 평정한 상태에서 개인별 서열명부가 작성되었다.

3. 2022년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관광재단 직원 근무평정 시행세칙」 제10조(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따르면 1차 평정자는 자기평가서를 제공받고 5일 이내 1차 평정을 완료하고 2차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차 평정자는 1차 평정자로부터 자기평가서와 근무성적평정서를 제공받아 3일 이내에 2차 평정을 완료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차, 2차 평정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 평정자의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재단 문서관리 규정」 제11조(수정)에 따르면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해당 구절의 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그 행위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을 한다고 되어 있고,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경우 1차, 2차 평정자는 직접 평정표와 평가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평정표와 평가표를 잘 못 작성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 작성을 하던지 수정할 경우 「관광재단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수정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에서는 2022년 12월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팀장 ○○○ 등 6명에 대해 1차, 2차 평정자가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표 중 ○○○○팀 6급 주임 ○○○ 등 3명의 1차 평정자 평가점수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부당하게 수정 작성을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을 세밀히 숙지하지 못하여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다면서, 향후 직원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① 「관광재단 직원 근무평정 시행세칙」 제8조 등을 위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관광재단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2021년 근무성적 평정 시 부당하게 평정한 평정점을 「관광재단 직원 근무평정 시행세칙」에 따른 배점기준에 적합하게 평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경남형 ○○○ ○○사업 관리 및 정산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팀)

조 치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한다) ○○○○팀에서는 지역관광 추진조직(이하 “사업수행단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경남형 ○○○ ○○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을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공모로 선정된 도내 2개 시·군의 사업수행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 지원, 관리 등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경남형 ○○○ ○○사업 시행 현황

참여기관		사업기간	총 사업비(백만 원)			자부담	사업계획(내용)
			계	지원금			
지자체	○○○			재단 (50%)	군 (50%)		
계			440	200	200	40	
○○군	○○○○○ ○○○	'22 ~ '23	220	100	100	20	- ○○○ 역량강화 - ○○○○ ○○○○ 구축 - ○○○○○○ 개발 및 운영 - (변경추가) ○○○○○○ 홍보 - (변경추가) ○○○○○○ 개설
○○군	○○○○○ ○○○○○		220	100	100	20	- ○○ ○○○ 활성화 사업 - 지역 ○○○○ ○○ 상품개발 - ○○○○ 발굴 및 운영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사업비 집행 및 점검·관리 기준

「경남형 ○○○ ○○사업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관광재단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2년 경남형 ○○○ ○○사업 업무협약서(이하 “업무협약서”라 한다)」 제8조(사업점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관광재단은 추진조직(사업수행단체)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조직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집행 부진 등 사업목표 달성이 미진한 경우 등은 해당 추진조직에 대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업무협약서」 제6조의2(사업비 집행) 제6항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의 세부사항은 본 협약 체결 시 관광재단에서 교부하는 「경남형 ○○○ ○○사업 사업지원금 관리기준(이하 “사업지원금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사업지원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수행단체는 사업지원금 집행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및 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을 재단 및 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업지원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단체에 대한 사업지원금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사업지원금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사업수행단체가 집행하는 사업지원금에 대하여는 집행 후 14일 이내 집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월별로 사업추진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점검하여 집행부진 등 사업목표 달성이 미진한 경우는 사업중단,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변경 기준

「위·수탁 협약서」 제6조(위·수탁 사무의 처리)에 따르면 관광재단은 사업수행 내용 등 중요사업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 제7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르면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 및 관광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목적에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및 관광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사업수행단체의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할 때는 시군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목적에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실적보고 및 정산 기준

「위·수탁 협약서」 제5조(위·수탁 사업비의 관리) 제3항에 따르면 관광재단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수탁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영수증 등 회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 제6조의3(사업비 정산)에 따르면 추진조직(사업수행단체)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정산내용을 검토 후 최종 정산서류를 관광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업지원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지원금 영수증(집행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 미제출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증빙방법은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보험 가입자료, 신규채용시 채용계획 관련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 ○○○ ○○사업을 정산할때는 사업수행 단체로

하여금 「사업지원금 관리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등 정산서류를 시군에 제출토록 하여 시군에서 최종 검토된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하여야 하고, 도에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관광재단 ○○○○팀에서는 '22년 ○○군 ○○○ 사업이 예정 공정보다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집행내역 등 추진현황을 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업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사업비 집행 및 점검·관리 부적정

'22년 ○○군 ○○○ 사업의 9월 추진현황에 대한 관광재단 내부 보고문서('22. 10. 15.)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사업수행단체가 ○○○○ ○○○, ○○○○ ○○운영에 13,200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2. 12. 29. 사업수행단체로부터 제출된 정산서류(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2022. 10월 이후에 실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군 ○○○ 사업 2022. 9월 추진현황 보고 내용

구분	보고 내용			실제 집행일
	'22년 9월 추진내용	결과 / 산출물	집행액 (천 원)	
계	○○○○ ○○○ 및 ○○○○ ○○○○ 등		13,540	
○○○ 역량강화	○○ ○○○ ○○(○○ ○○ ○○)	○○ ○○○ ○○ ○○ ○회	-	
○○○○○ ○○○○ 구축	○○○ ○○○○ ○○	○○○○ ○○○○ ○회	-	
	○○ ○○○○/○○ ○○○ ○○	○○○ ○○○○ ○회	-	
	○○○○○ ○○○ - ○○○○ ○○ 및 ○○○○/○○	○○○○ ○○ ○회, ○○○○ ○회	5,000	'22.10.20.
	○○○ ○○○○ ○ ○○	○○ ○○○ ○○○○ ○○	340	
○○○○○ ○○○○ 운영	○○○○○ ○○ - ○○○○○○ ○○ 등	○○○ ○회	-	
	○○○○○ <○○○○○○○○>	○○ ○○ ○ ○○○○	5,200	'22.10.20.
	○○○○○ (3주(8일간))	○○ ○○ ○ ○일 ○회 ○○		
<○○○○○>	○○○ ○○○ ○○, ○○○○○ ○명	3,000	'22.10.21.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군 ○○○ 사업은 2022. 4. 22. 공모 신청 당시 사업계획으로 ○○○ 역량 강화 및 ○○○○ ○○○○ 구축, ○○○○○○ 개발 및 운영의 내용으로 공모 신청되었으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야는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50%에 해당되어 공모대상자(사업수행단체) 선정 당락에 결정적인 항목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신규로 사업계획에 포함한 ○○○○○○ 홍보 및 ○○○○○○ 개설은 도에서 ○○○ 사업으로 해당 사업수행단체에 '21년, '22년에 이미 지원하였던 사업 내용이었으며, 당시 사업결과에 대한 효과 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 당시의 사업목적(계획) 고려하여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관광재단에서는 사업수행단체의 정당한 사유없는 변경계획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의 보완 검토 또는 사업중단 조치없이 변경승인하여 2022. 12. 30. '22년 ○○○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2023. 5. 8. 감사일 현재까지 ○○군 및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적정하게 연차사업으로 '23년 ○○○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 실적보고 및 정산 부적정

'22년 ○○○ 사업에 대한 사업 정산 시 시군으로부터 최종 검토된 정산내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하여야 함에도, 관광재단과 해당시군(○○군, ○○군)은 매칭지원금에 대하여 각각 정산하고, 시군의 정산서류는 제출받지 않고 재단지원금에 대하여만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도에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증빙영수증은 원본을 받지 않고 사본을 제출받아 정산하였으며 인건비는 채용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자료 등을 제출받지 않고 부적정하게 정산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위수탁 협약서와 사업비 관리지침 등 사업추진 전반에서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의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당초 업무처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본 감사기간 중 인건비에 대한 채용 계약서를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 ○○○○○의 추진현황과 실제 입출금 내역 간 지출일자가 상이한 건은 전문가 용역을 통한 사업운영으로 용역의 대가는 계약의 종료일에 집행되었으나 월별 추진현황에 사업의 실제적 추진 및 운영내용을 기입하였고, 경남형 ○○○ ○○사업은 공모선정시 2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23년 ○○○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건비 지출에 대한 채용계약서는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 정산 당시 사업수행단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어야 했고, 월별 추진현황 검토서는 공정 차질 여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하거나 사업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요 판단 근거가 되므로, 사업추진 현황검토서상 지출완료 내역은 실제 지출완료된 기준으로 기재하거나 지출예정일로 표시하여 공정 차질 여부를 알 수 있게 했어야 했다.

또한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모로 선정될 당시의 사업목적 및 계획범위 내에서 변경사유의 타당성 및 대체(변경)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검증)하여 시·군 및 도의 승인을 거쳐 변경했어야 했고, '23년(2차분) 사업계획은 '22년(1차분) 사업의 연차(연속) 계획이므로 1차분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처리를 일부 적의 이행하였다는 관광재단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본 사안은 민간사업자 지원에 대한 관리, 보고, 승인 절차 누락 등 업무에 대한 소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 성격상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닌 점과 경과실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감독책임자 순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① 「경남형 ○○○ ○○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7조(지도·감독 등) 등을 위반하여 경남형 ○○○ ○○사업 관리 및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팀 ○급 ○○○과 실무책임자 ○○○○팀 ○급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감독책임자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 사업의 주요계획 변경 시 전문가 자문·평가 등 변경 타당성 검증 절차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및 통보

제 목 직원 채용절차 준수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팀)
조 치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한다) ○○○○팀에서는 「관광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0. 5. 4. 설립 이후 2023. 5. 8. 감사일 현재까지 총 30회에 걸쳐 59명의 직원(임·직원 15명, 기간제근로자 44명)을 채용하였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임용결정 인사위원회 미개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관광재단 인사규정」 제46조(인사위원회 기능)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재단 인사규정」 제5조(채용방법)에 따르면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관광재단 직원 채용 시행세칙」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시행세칙은 재단의 정규직원과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2020. 11월) 공정채용 표준안 제2장 채용절차 제5조에 따르면 채용계획은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²⁾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2020. 5. 4. 재단 설립일 부터 2023. 5. 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21회의 기간제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단 한차례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내부방침 만으로 채용계획 및 최종합격자를 확정하여 「관광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기간제 직원 채용 인사위원회 미개최 내역

연번	채용 공고일	분 야	인사위원회 개최내역		비고
			채용계획	합격자결정	
계 : 21회					
1	2020. 5.25.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사업운영	미개최	미개최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방문자센터관리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일자리상담			
2	2020. 6. 5.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사업운영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방문자센터관리			
3	2020.10.23.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팀장급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팀원급			
		(기간제)웰니스관광클러스터조성사업 팀원급			
4	2020. 11. 6.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팀장급			
5	2020.11.24.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팀장급)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 사업운영(팀원급)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일자리상담(팀원급)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팀원급			
6	2020.12.17.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팀장급)			
7	2021. 1.25.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팀장급)			
8	2021. 2. 4.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팀장급)			
9	2021. 4.20.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센터장(팀장급)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팀원급			
		(기간제)경남MICE산업 활성화 사업 팀원급			

2) 채용계획 수립 및 최종합격자 결정

연번	채용 공고일	분 야	인사위원회 개최내역		비고
			채용계획	합격자결정	
10	2021. 5. 3.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센터장(팀장급)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팀원급			
		(기간제)경남MICE산업 활성화 사업 팀원급			
11	2021. 7. 6.	(기간제)웰니스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팀원급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운영사업 팀원급			
12	2021. 9.14.	(기간제)웰니스관광클러스터조성사업 팀원급			
		(기간제)컨벤션뷰로팀 팀원급			
13	2021.10. 1.	(기간제)웰니스관광클러스터조성사업 팀원급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팀원급			
14	2021.10.14.	(기간제)컨벤션뷰로팀 팀원급			
15	2021.12.16.	(기간제)웰니스관광클러스터조성사업 팀원급			
16	2022. 1.10.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팀원급			
17	2022. 4. 11.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센터장(팀장급)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팀원급			
		(기간제)경남MICE산업활성화사업 팀원급			
18	2022. 4. 22.	(기간제)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센터장(팀장급)			
		(기간제)경남MICE산업활성화사업 팀원급			
19	2022. 5.23.	(기간제)웰니스관광클러스터조성사업 팀원급			
20	2022. 6. 3.	(기간제)웰니스관광클러스터조성사업 팀원급			
21	2022.12.20.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팀장급)			
		(기간제)관광기업지원센터 팀원급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 장애인 의무 고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2023. 12. 31. 까지 1천분의 36이상, 2024년 이후는 1천분의 38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면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표 2]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32명으로 장애인 1명을 의무고용 하여야 함에도 2023. 5. 8.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표 2]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계산

관광재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비고
32명(정직원 20, 공무원 4, 기간제 8) ×36/1,000 = 1.152	1명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³⁾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⁴⁾의 점수에 5~10%의 가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 기준을 공고하여야 하며 4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⁵⁾ 가점 적용 대상자에게 모든 채용전형(서류, 필기, 면접)별 가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취업지원 실시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사립학교

4)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전물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다. '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라. 전물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5) 4명 이상의 의미 : 3명 채용시 1명(33.33%)을 가점 적용하는 경우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하여 가점적용을 할 수 없고 최소 4명 이상이 되어야 1명(25%)에게 가점 적용 할 수 있음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2023. 5. 8. 감사일 현재까지 총 30회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단 한차례도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 기준 안내 공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표 3]과 같이 4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가점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아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가능 채용 현황

연번	채용공고일	분 야	선발예정인원	응시자 수	최종합격자
계 3건			13	52	13
1	○○○○.○○.○○.	(기간제)○○○○○○○○○○ ○○ ○○○○(○○급)	4	23	4
2	○○○○.○○.○○.	(기간제)○○○○○○○○○○ ○○급	4	12	4
3	○○○○.○○.○○.	(기간제)○○○○○○○○○○ ○○급	5	17	5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5. 직원 임용기준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① 신규채용 - 다. 채용요건·시험방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재단 인사규정」 제6조(채용기준)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 시 직급별 채용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직원 채용 시행세칙」 제3조(채용기준)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 시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요건 등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고, 인사규정으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공고하고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표 4]와 같이 ○○○○. ○○. ○○. 및 ○○○○. ○○. ○○. ○○○○(○급)을 채용하면서 내부방침만으로 TOEIC 700점 이상, New TEPS 301점 이상, TOEFL(IBT) 80점 이상 등 「직원 채용 시행세칙」에 없는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4] 자격기준 미준수 채용광고 내역

연번	광고일자	분 야	채용광고 자격요건 내용	시행세칙에서 정한 자격요건
1	○○○○.○○.○○.	○○○○(○급)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TOEIC 700, NEW TEPS 301, TOEFL(IBT) 80]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2	○○○○.○○.○○.	○○○○(○급)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TOEIC 800, NEW TEPS 355, TOEFL(IBT) 91]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채용기준에 과도한 제한을 두게 되어 어학성적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였고, 어학성적 기준 또한 개별 채용별로 점수를 달리 하여 공고하였다.

이는 과도한 채용기준으로 인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손실시켜 관광재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6. 채용서류 보관·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에 따르면 공공기관⁶⁾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재단 기록물 관리 규정」 제13조(보존기간)에 따르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의 기준은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6종으로 구분하여 설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에서 채용관련 서류는 준영구로 보존한다고 되어 있다.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한 「관광재단 직원 채용 시행세칙」 제26조(채용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대표 이사는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채용 관련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 등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 폐기하거나 응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 ○○. ○○.와 ○○○○. ○○. ○○.에 ○○○○(○급)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표 5]와 같이 제출받은 응시원서 ○○○명 분에 대하여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실하였다.

[표 5] 응시원서 분실 내역

(단위 : 명)

연번	공고일자	분 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필기시험 합격자	응시원서 분실 내역
						계 ○○○명 분
1	○○○○.○○.○○.	○○○○(○급)	2	293	13	○○○명 분
2	○○○○.○○.○○.	○○○○(○급)	3	190	19	○○○명 분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7.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장 채용절차 준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③ 채용시험의 공고 - 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라. 재공고에 따르면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장 채용 시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및 재공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 ○○. ○○. 경 ○○○○○○○○○○○○○○○장 채용 공고 시 응시자 유의사항에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해당 채용분야를 재공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 하지 않은 채 [표 6]과 같이 응시자 ○○○이 서류전형을 통과 하였음에도 면접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재공고 하여 그 결과 ○○○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6] ○○○○○○○○○○○○○장 채용절차 미준수 내역

(단위 : 명, 점)

연번	공고일자	분 야	채용 인원	응시 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 합격자	채용절차 미준수 내용	비 고
1	○○.○○.○○	○○○○○○○○○○○○장 (○○)	1	3	1	0	○○○ 서류심사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 미진행	면접시험 결과 60점 이상이면 합격자 결정
2	○○.○○.○○	(재공고)○○○○○○○○○○○○장 (○○)	1	5	3	1	면접시험 결과 ○○○(○○), ○○○(○○), ○○○(○○)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계 직원의 업무 미흡 및 관련규정 미숙지로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관련 규정 및 「관광재단 인사규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직원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팀 ○○○○○○ ○○○(현 ○○○○과), ○○○○팀 ○○○○○○ ○○○(현 ○○○○과), ○○○○팀 ○○○○○○ ○○○(현 ○○○○관)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하고 실무담당자의 채용업무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장 ○○○○○○ ○○○, ○○○○○장 ○○○○○○ ○○○(현 ○○○○○○관), ○○○○○장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② 직원의 자격기준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는 등 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 및 주의 요구

제 목 ○○○○ ○○○○사업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팀)
조 치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한다) ○○○○팀에서는 주민주도 ○○○○ 사업 확산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1] 2020년 ○○○○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비(천 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2020년 ○○○○ ○○○○사업	500,000	250,000	250,000	'20.07.~ '21.03.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등	출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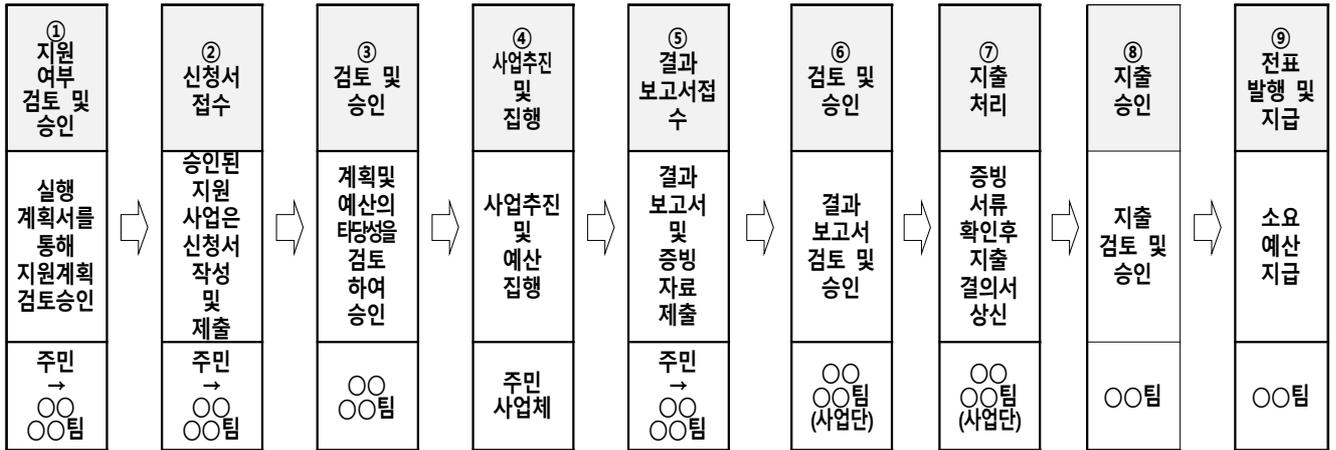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남○○○○협력센터 지침」 IV 예산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금은 사업비 담당기관인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사업단은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예산지급은 [표 2]와 같이 ‘예산집행절차’의 집행방식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 ○○○○사업 예산집행절차 현황도



[출처 : 경남○○○○협력센터 지침 재구성]

또한 모든 예산지원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뒤, 집행 및 사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사업비 집행 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는 지역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에서는 실행계획서를 통해 주민사업체로부터 신청서 제출받아 승인한 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등 8개의 사후관리 주민사업체에게 24,000천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1. 3. 18. 사업실행계획서를 수립하고, 2021. 3. 19.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2021. 3. 23. 사후관리 주민사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표 3]과 같이 (주)○○ 등 8개의 주민사업체의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2021년 1~ 2월에 이미 제출받은 신청서였으며, 연번 1, 2, 3, 5, 7의 사업체의 경우 2021. 3. 23. 사업체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사업수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사후관리 주민사업체에게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사후주민관리 사업체 지역협력사업 추진내역

연번	사업체명	사업비(천 원)	신청서접수기간 (사업체선정일)	신청서제출일	사업수행종료일	예산집행절차 진행여부
계	8개	24,000				
1	(주)○○	3,000	'21.3.18.~ 3.19. (21.3.23.)	'21.1.29.	'21.3.8.	검토보고서 미제출 및 증빙서류 미검토
2	○○○○	3,000		'21.1.29.	'21.3.11.	
3	○○○○ ○○○○	3,000		'21.2.1.	'21.3.9.	
4	○○○ ○○○○	3,000		'21.1.27.	'21.3.24.	
5	○○○○○○○ ○○○○	3,000		'21.1.27.	'21.3.24.	
6	(주)○○○○○○	3,000		'21.1.27.	'21.3.6.	
7	○○○○ ○○○○○ ○○○○○○○	3,000		미기입	'21.3.9.	
8	○○○○○○○○○ ○○○	3,000		'21.1.28.	'21.3.31.	

[출처 :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8개의 사후관리 주민사업체의 사업결과보고서는 제출받지 않았고, 증빙서류의 검토절차 등 내부 승인절차 없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고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에서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팀에서는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므로 행정운영에 대한 이해와 직원 교육, 내부 지침 마련 등 전반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편적 실무처리에 급급했던 상황으로 본 사업의 행정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의 실무담당자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과 이에 따른 회복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질병휴직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되어 실적보고가 늦어지게 되었으며, 관련자의 직무교육과 운영지침 준수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남○○○○협력센터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지원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뒤, 집행 및 사후결과보고서를 검토 받아야 하고, 담당자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출에 대한 검토와 승인에 대한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이 당연하며,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후임자를 통한 사업관리가 수행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 관광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었고, 내부적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 실무담당자의 질병휴직으로 인해 업무수행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에 있어 참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업무 성격상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닌 보조사업자 선정 등 계속·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경과실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감독책임자보다는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 ○○○○사업의 사업수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팀 ○급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 ○○○○ 사업의 실적보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팀 ○급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정부광고 업무 수행 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팀, ○○○○○팀)
조 치 기 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고 한다) ○○○팀 및 ○○○○○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정부기관등⁷⁾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

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정부기관등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 22.0422, 2022. 9. 14.]

제3호 및 제 4호에 따르면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 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홍보매체”란 관련 법⁸⁾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방송통신,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광고의뢰)에 따르면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⁹⁾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팀 및 ○○○○○팀에서는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 관광재단 ○○○팀 및 ○○○○○팀에서는 2020. 5. 4. ~ 2023. 5. 8. 감사일 현재까지 20건의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와 같이 14건에 대해서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지 않았고, 해당 홍보매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9) 「정부광고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II. 정부광고 운영절차, 3. 정부광고 세부 운영절차”에 따르면 정부광고의 모든 과정이 GOAD(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로 이루어지므로 가입 및 활용이 필수이며, 정부기관 등은 언론재단과 충분한 사전 컨설팅 등을 거친 후에 정부광고 요청서를 작성하여 언론재단의 GOAD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표]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 미의뢰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광고계약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지급액	홍보매체	담당부서
합계	14건			63,680	4개 매체	2개 부서
1	○○ ○○○○ ○○○○○○ ○○○○ ○○○ ○○	2021. 02. 03	(주)○○○○	990	인터넷	○○○팀
2	○○ ○○○○ ○○○○ ○○ ○ ○○○ ○○ ○○ ○○	2021. 10. 28	○○○○	8,000	SNS	
3	○○○○ ○○○ ○○○○ ○○ ○ ○○	2022. 10. 18	○○○○ ○○○○	3,450	인터넷	
4	○○ ○○○○ ○○○○ ○○	2021. 06. 17.	○○○	3,758	인터넷	○○○ ○○팀
5	○○ ○○○○ ○○○○ ○○	2021. 06. 25.	○○○○	7,200	인터넷	
6	○○ ○○○○ ○○ ○○○○ ○○(○○○○)	2021. 07. 08.	○○○○○	5,000	인터넷	
7	○○○○ ○○ ○○○○ ○○○○○○ (○○○ ○○) ○○	2021. 08. 27.	(사)○○ ○○○○ ○○○○○○○	5,280	정기간행물	
8	○○○○	2021. 09. 13.	○○○○○ ○○○○○	5,917	정기간행물	
9	○○○○ ○○ ○○○○ ○○ ○○○○ (○○○ ○○) ○○(○○)	2021. 11. 26.	(사)○○ ○○○○ ○○○○○○○	2,085	정기간행물	
10	○○○○ ○○ ○○○○ ○○○○ ○○	2022. 10. 19.	○○○ ○○○○	6,760	인터넷	
11	○○○○ ○○ ○○○○ ○○○○ (○○○○) ○○	2022. 10. 20.	○○○○○	4,000	인터넷	
12	○○○○ ○○ ○○○○ ○○○○ (○○○ ○○) ○○	2022. 10. 20.	(사)○○ ○○○○ ○○○○○○○	3,300	정기간행물	
13	○○○○ ○○ ○○○○ ○○○○ (○○○○) ○○	2022. 12. 05.	(주)○○○○	5,940	신문, 인터넷	
14	○○○○ ○○ ○○○○ ○○○○ (○○○○) ○○○○	2022. 12. 05.	○○○○○	2,000	신문	

[출처 :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직접 10개 업체에 총 14건 63,680천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에서는 이 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출자출연기관인 본 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한다)의 제2조(정의)에 규정된 법률 적용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로 확인해본 바 이는 본 재단뿐만 아니라 다수의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이고 법령정비 권고사항(“정부광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이기도 하며,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온 시점(2022년 9월)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재단 내 전파가 어려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광고법」상 법률 적용 기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못하였고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가 법령정비 권고사항(“공공법인”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기도 하며 법제처 법령해석 시점이 2022년 9월일지라 하더라도, 「정부광고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1. 정부광고 업무개요, 3. 정부광고 대상기관”에 따르면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기관 여부가 모호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판단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언론재단)에 대상기관 여부 문의 요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팀과 ○○○○○○○○○○팀은 법제처 법령해석 시점인 2022년 9월 전에도 6건의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사안은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경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절차상 경미한 잘못에 해당하여,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의 지도·감독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실무담당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정부광고 업무 수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팀 ○급 ○○○, ○○○팀 ○급 ○○○(현 ○○○○○팀), ○○○○○팀 ○급 ○○○(현 ○○○○○팀)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